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

국민 취업 지원제도

이름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
*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

□ 지원대상

I 유형	II 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•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저소득층) 중위소득 50% 초과 ~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• (청년) 18세 ~ 34세 • (중장년) 중위소득 60~100% 이하

- **(소득·재산)**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* (2021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중위소득 50%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중위소득 120%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	7,954,324	8,996,638

- **(취업경험)**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- **(특고·프리랜서 등)**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		I 유형(40만명)			II 유형(19만명)			
	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
			청년	비경험	저소득층	특정계층		
지원대상	연령	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						
	소득	중위소득 50% ↓	중위소득 120% ↓	중위소득 50% ↓	중위소득 50~60% ↓	×	×	중위소득 60~100% ↓
	재산	3억원 ↓	3억원 ↓ *고시로 규정 가능	3억원 ↓	×			
	취업경험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	×	×	×			
지원내용 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	취업지원서비스	•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						
	소득 지원	구직촉진수당	•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× 6개월)		×			
		취업활동비용	×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	
지원기간	• 12개월 (6개월 연장가능)		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급여수급자 •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							

○ 특정계층

-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
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
⑫ 니트(NE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□ 신청방법

-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(신청방법) 온라인 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(신청장소)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제출서류)
 -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 - (필요시 추가서류)
 -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-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-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· 재산 · 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신청 · 접수

온라인 : www.work.go.kr/kua
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오프라인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문의 상담

고용센터
국번없이 1350
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
더욱 자세한 내용은
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!